

1998년
제74회 임시회

**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
심 사 보 고 서**

사 회 도 시 위 원 회

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

1998년 3월
사회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1998년 3월 3일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8년 3월 6일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74회 서구의회(임시회)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(1998년 3월 24일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〈제안설명자 : 가정복지과장〉

가. 제안사유

청소년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, 출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① 청소년출입제한구역 및 시간의 지정

○ 지정주체 : 구청장

○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대상 : 청소년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구역

-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목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
- 청소년 유해매체물, 약물 등의 판매·대여·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
- 유타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
- 관할지역 주민 1,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
- 기타 구청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

- 청소년출입제한구역내 청소년출입제한 시간대의 지정
 -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5시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

- 지정절차
 - 지역주민 의견반영 절차 이행 : 공청회, 토론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반영
 -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사항 서구소식지 등 게재·홍보

②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의 운영

- 청소년출입제한구역 및 시간안내 표시문 설치 관리
-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지도·단속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<전문위원 박 홍 표>

- 조례제정의 타당성에 관하여

-청소년에게 **건전한 환경**을 조성해 주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매우 중요한 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,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른바 **유해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**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유해환경과 청소년의 비행유발과는 매우 **강한 상관관계**가 있다는 것이 많이 입증되고 있어

-**청소년보호법 제5조**(해당지역안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 **지방자치단체의 의무**를 규정)와 **제25조**(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과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)에 근거하여, 우리 관내에 청소년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구역이 있을 때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요구된다고 하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**조례 제정의 필요성**을 인정.

○그러나 행정규제는 그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**태도와 행동의 변화**를 유도하는 데에 있으며, 정부가 개입하여 **민간의 행위를 제약**하거나 통제를 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필연적으로 **인권 또는 시민의 자유와 상충되는** 결과를 야기하게 되므로 조례제정 후에도 1)가능한 한 **출입제한구역의 지정은 회피하도록** 노력하고 2)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①**조례의 지정대상 규정의 엄격한 해석과** ②**공청회·토론회 등 사전절차의 철저한 이행이**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3)출입제한구역을 지정했다면 **확실적이고 실적 위주보다는 하나의 상징성을 갖는 구역으로 유도·운영함이** 좋겠다는 의견임.

○대신에 현실적으로 더 효과적인 청소년보호 방법으로서 1)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하에 **유해업소 등을 철저하게 지도 단속하는 것과** 2)현재 구성되어 있는 **청소년 지도위원, 청소년위원회 등의 유기적인 활용방안**을 강구할 것을 제안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지역주민 1,000명 이상이라는 수의 적절성에 관한 의견은? 구역 지정 후 일정기간 주민들에게 그에 관한 홍보가 있어야 함을 규정함이 좋을 것(장헌일 의원)
 - 1,000명 이상의 연서란 사실상 확보하기 어려운 숫자라고 생각함(가정복지과장)

- 청소년 선도위원의 임명과 활용 현황은?(김동식 의원)
 - 현재 동별로 정비단계에 있어 3월말 경에는 완비되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임(가정복지과장)

-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지정이 그 외 비지정구역내 유해업소의 지도·단속에 소홀함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은가?(정종철 의원)
 -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음(가정복지과장)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구역지정 조건의 현실화
- 구역지정의 사후절차 보강

나. 수정의 주요골자

- 조례안 제2조 4호 “1,000명”을 “800명”으로 함
- 조례안 제4조(지정절차)의 조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“제한구역 지정 후 지역주민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일정기간 홍보하여야 한다”로 함

7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8. 소수 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